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발행일 2026. 8. 10.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검찰 특수부·범죄정보·합동수사부 등
검찰 직제 이식, 검찰 답습 우려

검찰 인력의 무검증 승계, 검찰 수사
패러다임 재현 위험

목차

목차	2
입법의견서 요지	3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5
1. 중수청 인력, 검찰청에서 다수 이체 아닌, 각 기관으로부터 다원화 해야	5
2. 대검 범죄정보 조직의 재현 및 확대에 의한 수사·정보 분리 형해화 우려	7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9
1. 합동수사과, 기존 검찰 합동수사부 직제 이식	9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안」에 대한 의견	11
1. 검찰 수사 인력의 부적격 인력 스크리닝 장치 미비	11
2. 내부 고위 수사관의 징계위원장 보임, 제식구 봐주기 결정 우려	13
[참고] 중수청법 부칙 조문	1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15

-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5일(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차 재입법예고안),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총 4개)을 입법예고함.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에 검찰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임. 이러한 검찰개혁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 및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성이 각 중수청,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함.
-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은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조직과 인력, 대검 범죄정보 조직 직제를 신설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음. 이는 명목상 중수청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검찰 특수수사 패러다임의 고착화’ 및 ‘인적 카르텔의 연장’을 초래할 위험이 큼. 구체적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첫째, 중수청 인력이 검찰청 인력 위주로 이체돼 다양성이 부족함. 정원표에 따르면 수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부 비수사 행정 요원들의 쪼개기 파견 총원 수준에 불과함. 조직의 절대적 다수를 종전 검찰청에서 이체하고 직접수사 직류들로 채울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 인력의 특수수사 관행과 밀실식 조서 위주 수사 패러다임이 신설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큼.
- 둘째, 대검 범죄정보 조직의 재현 및 확대에 의한 수사·정보 분리 원칙 형해화 우려가 있음. 과거 불법 사찰 및 기획수사 논란을 야기했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직제를 답습한 수사정보관을 신설하고, 이를 지방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함. 구체적 형의 없는 수사정보 수집을 상시화함으로써 수사·정보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고 위헌적 표적·별건 수사를 야기할 위험이 큼.
- 셋째, 합동수사과는 기존 검찰 합동수사부 직제 이식에 불과함. 기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직제화돼 있던 것을 중수청 직제 내 합동수사과로 그대로 이식함. 타 부처 파견 인력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이를 독점하고 수사정보관 직제와 결합할 경우, 과거 검찰 특수부식 표적·기획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 넷째, 검찰 수사 인력 중 부적격 인력 스크리닝 장치가 미비함. 검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피의사실 공표, 별건·표적 수사 등 인권침해

전력자를 걸러낼 보직 제한 기준이 부재함. 이에 따라 신설 중수청과 공소청 간 인적 카르텔이 유지되고 인권침해적 수사 기법이 승계될 우려가 있음.

- 다섯째, 내부 고위 수사관(2급 이상)의 수사관 징계위원장 보임은 제 식구 봐주기 결정 우려가 큼. 이는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와 셀프 징계를 초래하여 징계 기구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동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각각 입법건의서를 제출하며, 사건 선별 구조 방치와 수사기관 간 권한 갈등, 통보 대상 범죄의 무제한 확장 등 하위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발생시킬 중대한 문제점들을 거듭 지적하였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개선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검토해 수정 또는 삭제를 촉구하는 입법건의서를 제출함. 이 입법건의서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향타가 되기를 기대함.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1. 중수청 인력, 검찰청에서 다수 이체 아닌, 각 기관으로부터 다원화 해야

1)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 중수청 본청 공무원 396명, 소속기관 공무원 2,478명(총 2,874명)으로 구성함.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 것임.
- 타 사법·세무 행정기관에서의 파견 및 이관 정원은 법무부 3명, 국세청 8명, 관세청 5명, 경찰청 37명, 금융위원회 2명 등 전체 조직의 1.9%(총 57명)임.

제4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수사관의 정원은 175명을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4급 수사관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10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6급 1명, 7급 2명)은 법무부, 8명(6급 1명, 7급 5명, 8급 2명)은 국세청,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관세청, 37명(경정 2명, 경감 8명, 경위 11명, 경사 16명)은 경찰청, 2명(경사 1명, 경장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총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총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총계	396
수사관 계	333
중대범죄수사청장	1
1급	1
2급	8
3급	8
4급 이하	315
일반직 계	63
4급 이하	60
전문경력관	3

[별표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1항 관련)	
총계	2,478
수사관 계	2,234
1급	6
2급	8
3급	22
4급 이하	2,198
일반직 계	205
4급 이하	205
경찰공무원 계	39
경정이하	39

2) 문제점

- 정원표에 따르면 수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부 비수사 행정 요원들의 쪼개기 파견 충원 수준에 불과함. 조직의 절대적 대다수를 종전 검찰청에서 이체하고 직접수사 직류들로 채울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 인력의 특수수사 관행과 밀실식 조서 위주 수사 패러다임이 신설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큼.

- 중수청은 금융범죄, 공정거래, 조세범죄 등 고도의 행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다루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감원 등 출신의 전문 인력의 임용 및 배치를 통한 다원화가 필요함.

3) 요구/의견

- 검찰청외 타 부처 출신 충원 비율을 전체 정원의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시행령안 제48조 수정).
- 특히 금융범죄와 조세범죄의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될 서울청과 지방청의 금융·경제범죄수사국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들의 정식 이관 및 충원 배점을 늘려야 함.
- 경력경쟁채용 대상자를 전직 검찰 공무원에만 국한하지 말아야 함. 공인회계사, 자본시장 분석가, IT 포렌식 엔지니어, 세무사 등 민간의 고도화된 전문직 역량군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력채용 트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대검 범죄정보 조직의 재현 및 확대에 의한 수사·정보 분리 형해화 우려

1)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 중수청 차장 밑에 고위공무원급 ‘수사정보관(2급 수사관)’ 편제함. 하부에 ‘수사정보1담당관(3급, 분석·검증)’ 및 ‘수사정보2담당관(4급, 수집·관리)’을 배치함. 아울러 전국의 지방중수청에도 독자적인 ‘수사정보담당관(4급)’을 보좌기관으로 두도록 하였음.

제11조(수사정보관) ① 수사정보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수사정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집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된 중대범죄등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검증·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범죄등 정보와 관련된 기획·조정·지원·지휘·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문제점

- 과거 대검찰청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기획 수사 및 불법 사찰 논란(과거 판사사찰 문건 작성 시 대검 압수정보 활용 정황 등)을 끊임없이 일으키다 축소와 부활을 반복하던 현 범죄정보기획관실(구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설계와 완벽하게 동일함.
- 구체적인 개별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일상화하는 정보 조직을 독자적으로 거느리는 구조는 그 자체로 위헌적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가능한 구조를 상시화하려는 것임.
- 특히 기존 대검에만 있던 범죄정보 수집 조직을 전국 조직으로 확대하고 있음.

3) 요구/의견

-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을 전담하는 직제를 중수청에 마련할 필요와 이유가 없음. 전면 폐지해야 함.
-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과 등에서 해당 범죄의 수사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족함.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1. 합동수사과, 기존 검찰 합동수사부 직제 이식

1)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서울), 금융범죄합동수사과(서울), 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 마약합동수사과(수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 등 5개의 합동수사과를 신설함.

제17조(금융범죄수사국)

① 금융범죄수사국에 금융범죄수사1과 · 금융범죄수사2과 · 금융범죄합동수사과 및 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21조(첨단수사국)

① 첨단수사국에 방위사업 · 산업기술수사과 · 사이버정보수사과 및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24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반부패수사1과 · 반부패수사2과 · 마약합동수사과 및 방위사업 ·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제2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 · 금융범죄수사과 ·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2) 문제점

- 기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직제화되어 있던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부(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서울동부지검) 그리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서울북부지검) 및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수원지검)을 중수청 법제에 직제화한 것으로 보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안 제48조 등에 배정된 타 부처(금융위 2명, 국세청 8명, 관세청 5명, 경찰청 37명 등)의 정식 이관·파견 인원은 전체 중수청 정원에서 약 1.9%인 57명에 불과함. 이에 파견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관의 보조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종전 검찰 특수부 출신 수사관들(4급 과장은 검사 출신으로 보직될

가능성 높음)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즉, 명칭이 ‘합동’ 수사일 뿐 기존 검찰청 직제 이식에 불과함.

- 또한 수사정보의 수집권한을 갖는 ‘수사정보관’(기존 범정) 직제, 중수청법상 통보조항(제43조제2항)과 이 5대 합동수사과가 결합하여 여야 정치인이나 금융 대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검찰 특수부식 수사를 반복할 가능성도 높음.

3) 요구/의견

- 기존 합동수사부 중 불필요한 직제는 대폭 축소해야 함.
- 신설되는 5개 합동수사과의 과장(부장) 및 실무 수사 책임 보직 중 종전 검찰청 소속이었던 자의 보직 비율을 제한하고,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이관 공무원이나 신규 공채 전문 인력을 과장 및 주임수사관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합동수사부 사건은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중수청법 제44조)에서 필요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등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함.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안」에 대한 의견

1. 검찰 수사 인력의 부적격 인력 스크리닝 장치 미비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직·마약수사직 일반직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때, 경력경쟁채용 형식은 취하되 시험 및 필요한 근무경력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중수청법 부칙 제4조제3항). 이에 따라 임용령에서 시험 및 필요한 근무경력을 면제함.

제10조(보직관리의 기준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한 수사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상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

부칙 제2조(임용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 시보 임용 면제
2.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 등(종전 검찰청,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에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소청, 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를 말하며, 이하 “종전 검찰청등”이라 한다)에서 시보 임용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검찰청등에서의 시보 임용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3.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②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3항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근무 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③ 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최초로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법 부칙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종전 검찰청등에서 법무부로 기관 간 전보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다시 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2026년 10월 1일 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

2. 2026년 10월 2일 이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공소청

⑥ 종전 검찰청등에서 파견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4월 29일 사이에 파견으로부터 복귀하거나 또는 휴직으로부터 복직하고, 복직할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파견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파견 및 휴직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갖춘 것으로 보며, 종전의 파견 및 휴직과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의 파견 및 휴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2) 문제점

- 과거 검찰 특수부 등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표적 수사, 가혹한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 직접수사 기법으로 수사하던 검사 및 검찰 수사 인력을 아무런 적격 심사나 인적 청산 없이 중수청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수사관에 임명되거나 승계될 수 있음.
- 중수청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조치로 이해되나, 임용령안은 임용된 수사관들의 최초 보직 부여 단계에서 인권 침해 전력이나 부적격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세부 보직 제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간 기존 인적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3) 요구/의견

- 중수청에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하는 ‘수사부서(경제·금융·반부패·마약·첨단수사국 등)’와 비수사 행정부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별건·표적 수사가담자, 피의사실 공표죄 연루자, 성폭력·약자 대상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전력자는 수사부서 보직 부여를 금지(안 제10조 등 관련)해야 함.
- 기타 근무성적평정시 중대한 인권침해, 수사절차상 위법 부당 여부를 평가하여 승진 제한 및 보직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2. 내부 고위 수사관의 징계위원장 보임, 제식구 바꾸기 결정 우려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 제정안은 6급 이하 수사관의 징계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수사관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중수청 2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제2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2급 이상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와 같은 소속 기관등(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하며, 이하 “소속 기관등”이라 한다)의 상위 계급인 수사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징계위원회”는 “수사관 징계위원회”로, “일반직공무원”은 “수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2) 문제점

- 수사관들의 비위와 적법절차 위반 등 징계 혐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중수청 고위 수사관으로 보임케 하여, 제식구 바꾸기 및 셀프 징계의 가능성이 있음.

- 중수청 2급 이상 수사관은 검사 출신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3) 요구/의견

-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함.

[참고] 중수청법 부칙 조문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6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4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 전단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은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6일(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과 7월 10일(금) 수정안(이하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함. 해당 입법예고안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하고 있었음. 이에 참여연대는 두 차례 문제적 조항들을 재검토 및 수정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을 통한 사건 선별 구조는 여전함. 중수청법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는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난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 입법의견서에 우선수사권·이첩요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통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이번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에도 처리 기한이나 절차적 통제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함.
- 둘째, 통보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여전함.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제1항은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과 대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범죄를 제외 사유로 추가하고(제6호, 제7호 신설),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유지함. 이는 열거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가 통보 대상으로 포섭돼,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제한해야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임.
- 셋째, 개인정보 공유 및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도 여전함.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제12조(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는 기존과 같이 통보 대상 범죄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보되는 정보의 항목 범위, 피의자 단계에서의 통보 적정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넷째,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심의담당관 신설 규정이 여전함.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직위 수사심의담당관을 두는 것부터가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게다가 시행령 1차 입법예고안 제14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 제2항은 수사심의담당관을 “둘 수

있다”(임의규정)고 했으나,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지정한다”(의무규정)로 바뀌 수사심의담당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 조사종결권 부여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음.

- 다섯째,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축소함. 재입법예고안 제18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항~제6항은 사건관계인·관여수사관 및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등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것을 “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함.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권리를, 위원회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으로, 중수청법 제44조(수사심의 등)가 예정한 사건관계인의 실질적 절차 참여권을 하위법령 단계에서 축소·형해화한 것임.
- 두 차례의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5가지 핵심 문제는 모두 개선되지 아니함. 위 5가지 독소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수정 요구의 상세 내용은 지난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별첨 자료로 갈음함.

▣ 별첨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안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발행일 2026. 8. 10.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유승익 교수)
담당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